

| | | |
|---|---|---|
|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790호 2021. 2. 10.(수)</p> |  |
|---|---|---|

| | |
|--------|-------|
| 선 결 | 기관의 장 |
|--------|-------|

고 시

| | |
|---|---|
| 제2021-28호 거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3 |
| 제2021-32호 도로명주소 고시 | 6 |
| 제2021-33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8 |

공 고

| | |
|--|----|
| 제2021-216호 거창군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공람·공고 | 9 |
| 제2021-235호 경남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 | 10 |
| 제2021-237호 2021년도 거창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12 |
| 제2021-238호 「거창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8 |
| 제2021-245호 공시송달공고 | 46 |
| 제2021-247호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수정) | 47 |
| 제2021-251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58 |
| 제2021-259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9 |

제2021-260호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1
거창군수도사업소 공고 제2021-4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5
거창군수도사업소 공고 제2021-5호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95
거창군수도사업소 공고 제2021-6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120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1-28호

거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창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04일

거창군수

1. 거창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경미한 사항)

가. 체육시설(변경)

1) 골프장(변경)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m ²)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1 | 체육시설 | 골프장 |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 1,814,016 | 증)3,618.5 | 1,817,634.5 | 경상남도 고시 제2007-92호 (2007.03.29) | |

■ 골프장 변경사유서

| 도면표기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1 | 체육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변경 - 1,814,016m²→1,817,634.5m² [증) 3,618.5m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축척변경 및 좌표면적 환산에 따른 면적 정정 반영 |

2. 거창군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명 칭 :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일명:감악산골프장)

다. 사업규모(변경)

- 당 초 : 1,814,016㎡
- 변 경 : 1,817,634.5㎡ (증 3,618.5㎡)
- 토지이용계획

| 구 분 | 면 적(㎡) | | | 구성비 |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 |
|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 합 계 | 1,814,016 | 증) 3,618.5 | 1,817,634.5 | 100.0 | 100.0 | |
| | 체육시설 용지 | 334,067 | 감) 634 | 333,433 | 18.4 | 18.3 | |
| | 건축시설 용지 | 9,165 | | 9,165 | 0.5 | 0.5 | |
| | 공공시설 용지 | 93,929 | 증) 389 | 94,318 | 5.2 | 5.2 | |
| | 녹지 용지 | 1,376,855 | 증) 3,863.5 | 1,380,718.5 | 75.9 | 76.0 |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 성 명 : 코리아신타(주) 대표이사 백인균

마.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08. 03. 13. ~ 2020. 12. 31.
- 변 경 : 2008. 03. 13. ~ 2021.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3.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 편입면적 (㎡) | | 소 유 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주 소 | 성 명 | 권리명 | 권리자 | |
| 합계 | | 13필지 | | 1,814,016 | 1,817,634.5 | 1,814,016 | 1,817,634.5 | | | | | |
| 1 | 신원면 덕산리 | 231 | 답 | 255 | 253.8 | 255 | 253.8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 | | |
| 2 | 신원면 덕산리 | 255 | 임 | 205 | 205.7 | 205 | 205.7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 | | |
| 3 | 신원면 덕산리 | 256 | 임 | 89 | 89.3 | 89 | 89.3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 | | |
| 4 | 신원면 덕산리 | 257 | 임 | 89 | 88.5 | 89 | 88.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 | | |
| 5 | 신원면 덕산리 | 374 | 답 | 2,172 | 2,135.8 | 2,172 | 2,135.8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 | | |
| 6 | 신원면 덕산리 | 377 | 임 | 89 | 86.8 | 89 | 86.8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 | | |

| | | | | | | | | | | | | |
|----|------------|-----|---|-----------|-------------|-----------|-------------|---------------------------------------|---------------|--|--|--|
| 7 | 신원면 덕산리 | 378 | 답 | 873 | 880.6 | 873 | 88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 | | |
| 8 | 신원면 덕산리 | 379 | 답 | 231 | 229.4 | 231 | 229.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 | | |
| 9 | 신원면 덕산리 | 380 | 답 | 423 | 412.1 | 423 | 412.1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 | | |
| 10 | 신원면 덕산리 | 391 | 답 | 833 | 836.3 | 833 | 836.3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 | | |
| 11 | 신원면 덕산리 | 440 | 임 | 1,236 | 1,222 | 1,236 | 1,222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 | | |
| 12 | 신원면 덕산리 | 산13 | 임 | 1,805,339 | 1,808,892.2 | 1,805,339 | 1,808,892.2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 | | |
| 13 | 신원면 덕산리 | 산59 | 임 | 2,182 | 2,302 | 2,182 | 2,302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 | |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2. 10.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로 201-14 등 6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 비고 |
|-------------|-------|--------|-----------------|----|
| (별 도 열 람) | | | |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 일련 번호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고 시 일 |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 | | 도로명 | 도로명주소 | | |
| 1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66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로 201-14 | 20210210 | 20091228 | 남하면 지산리를 지나 가조면으로 가는 도로임을 반영 | 부여 |
| 2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2026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로 606-20 | 20210210 | 20091228 | 남하면 지산리를 지나 가조면으로 가는 도로임을 반영 | 부여 |
| 3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산152, 1028-6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구산1길 269-77 | 20210210 | 20090401 | 마을 곁에 있는 아홉골에 연유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 부여 |
| 4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1052-3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보혜길 181-7 | 20210210 | 20090401 | 보혜산이라는 산이름이 반영된 도로 | 부여 |
| 5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187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상수월길 39-16 | 20210210 | 20090401 | 상수월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 부여 |
| 6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99-13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47 | 20210210 | 20090401 | 원학이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 부여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거창군 거창읍 소만1길 17, 502호 (주)지엔지건설(이진산)이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10일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창읍 대동리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상 호 : (주)지엔지건설

나. 대표자 : 이진산

다. 영업소재지 : 거창군 거창읍 소만1길 17, 502호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가.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571외 11필지

나. 대지면적 : 3,380.0m²

다. 연 면 적 : 6,221.8744m²

라. 규 모 : 아파트 1동(48세대), 부1동(근린생활시설 1동 202.4375m²)

마. 형 별 : 84A형(전용면적 84.9576m²), 84B형(전용면적 84.8625m²)

151M형(전용면적 151.9969m²), 155M형(전용면적 155.0102m²)

4. 사업시행기간 : 2021년 3월 ~ 2023년 2월

※감리자지정은 사업주체의 요청에 따라 2021.03.31.이후로 연기

◎ 거창군 공고 제2021-216호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공람 · 공고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을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2. 04.

거 창 군 수

1. 농업진흥지역 변경 계획(안)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092-2번지 일원

나. 해 제 면 적 : 농업진흥구역 9,020㎡

다. 해 제 사 유 : 거창읍 양평리 일원의 3ha이하의 자투리 농지에 대해 거창군민의 체육활동 및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를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 해당 공람공고는 해제(안)으로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제척될 수 있으며, 확정된 계획이 아님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1년 02월 04일 ~ 2021년 02월 18일 (14일간)

나. 열람장소 : 거창군 도시건축과, 체육시설사업소

다. 열람도서 : 정비도면 및 토지조서

라. 의견제출 :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의견서(열람장소에 비치)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1-235호

경남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일원에 대하여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5일
거창군수

1. 제한지역

- 대상지역 :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47번지 일원
- 대상면적 : 303,722㎡(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거창군 홈페이지(www.geochang.co.kr)에서 확인가능

2. 제한사유

-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써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3.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가능)

4.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간
- 공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또는 미래전략과(☎055-940-3364), 거창군 남상면사무소(☎055-940-7660)

5. 제한대상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②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③ 토석의 채취
- ④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⑤ 토지분할

6. 제한행위 제외대상

- ① 경미한 개발행위(허가대상 제외)
- ② 공익사업으로 개발행위 제한 목적에 지장이 없는 행위
- ③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④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7.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해당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제출서 상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거창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거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1호

2021년도 거창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1년도 거창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5일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 임용부서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인원 | 비고 |
|----------------|-----------|-------------------|------|----|
| 거창군 (인구교육과) | 평생교육 업무전반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업 제한사유가 없으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만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기준

(기준 : 임용공고일)

| 임용분야 | 자 격 요 건 |
|--------------|--|
| 평생교육 업무전반 | <p>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관련 실무경력자 우대</p> |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다만,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 주20시간 근무)

다. 직무내용

| 근무 부서 | 임용예정 분야 | 임 용 예정등급 | 인원 | 직 무 내 용 |
|-----------|--------------|------------------------|----|--|
| 인구 교육과 | 평생교육 업무전반 | 지방행정 서 기 (일반임기제) | 1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창군 평생교육센터 운영 ○ 평생학습축제 개최 ○ 평생교육 우수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 ○ 강사은행제 및 평생학습동아리 관리 및 운영 ○ 지식복지종합시스템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 평생학습관련 통계관리 등 |

3.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4. 임용 기간 및 근무시간

- 임용기간 : 2년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당 40시간

5. 보수 수준

(단위 : 천원)

|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
| 8급(상당) | 54,984 | 39,222 |

※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자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수 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름

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여부 서면 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검증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시험 일정

|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
|---|---------------|-----------------------|--------------|
| 2021. 2. 16. ~ 2. 18.(3일간)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 ~ 18:00) | 2021.2.22.(월) | 2021.2.25.(목) 거창군청 | 2021.3.3.(수)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business>)에 게시
-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접수장소 :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2층)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시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거창군 수입증지 대신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우편접수 시 거창군 행정과 사전연락 바람 (055-940-3172)

9.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10.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 2매 제출
 -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함.
 - 응시수수료 : 거창군수입증지(거창군청 내 민원소통과 판매) ▶ 8급 5,000원
 -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됨
 - ※ 우편접수시 거창군수입증지(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자격, 경력, 학위 등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조회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 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집계 결과)
-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거창군홈페이지 취업정보 시험채용정보에 게시

12. 응시자 유의사항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함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거창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거창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055-940-3172)로 문의하시기 바람

13. 코로나19 예방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일까지 중국 등 외국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 방문 자제
-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원서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등 외국 또는 국내 유행지역을 방문 하였거나 확진자와 접촉 후 고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 및 검사 실시
- * 신 고 처 : 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 거창군 행정과(055-940-3172)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면접시험 관련 사전 안내

- ① (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
- ②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 ③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
- ④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씻기 등을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스스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
 - 개인 음용수 준비

<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 | |
|-----------|--|
| 확진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 의사환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난 자 |
| 조사대상 유증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 감염병의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균자와 접촉 또는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p>※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의2호(2020. 3. 4. 시행)</p> |

※ 모든 응시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코로나19 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친 적이 있는지 여부도 유심히 살펴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분야 | | 응시번호 | 생년월일 | 성명 |
|----------|-----------|----------|------|----|
| 임용 부서 | 거창군 인구교육과 | (담당자 기재) | | |
| 분야 | 평생교육업무전반 | | | |

| 연번 | 제 출 목 록 | 제출여부 |
|----|--|------|
| 1 | 응시원서 ▷ [서식1] | |
| 2 | 이력서 ▷ [서식2] | |
| 3 | 자기소개서 ▷ [서식3] | |
| 4 | 직무수행계획서 ▷ [서식4] | |
| 5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 6 | 주민등록초본 ▷ 전체 주소변동내역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
| 7 | 자격검증 동의서 ▷ [서식5] | |
| 8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서식6] | |
| 9 | 기타 개별 자격증 및 경력사항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업무분장 등 경력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해당자만)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 “○” 표시

[서식1]

응시원서

본인은 (2021년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거창군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 | |
|----------------|------------------------------|--------------|---------------------------|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 (평생교육 업무전반) | | (한자) |
| 주민등록 번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 주소 | (Ⓢ) | | ※거창군 수입증지 날인 5,000원 |
| 전자우편 | | | |
| 전화 (휴대전화) | | | |

응시표 (2021년도 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

| | | | |
|-----------------------------|------|----------------|--|
|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 성명 | (한글) | (한자) | |
| 2021년 월 일 거창군 인사위원회위원장 Ⓢ | | | |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거창군 수입증지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증지 날
인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서식2]

이 력 서

| 가. 공통사항 | | | | | |
|----------|--|----------|--|-----|--|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학위만 기재) | | | | |
|--|------|-------------|---------|------|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서식3]

자 기 소 개 서

| 임용 분야 | | 임용 직급 | | 성명 | |
|---------------------|--|----------|--|----|--|
| | | | | | |
| 2021. . . 작성자 : (인) | | | | | |

[서식4]

직무수행계획서

| 임용 분야 | | 임용 직급 | | 성명 | |
|-----------------|--|----------|--|----|-----|
| | | | | | |
| 2021. . . 작성자 : | | | | | (인) |

-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하는 분야 (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으로 작성
-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창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하수 조례」

2. 개정이유

- 가.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기준을 신설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법령 재기재 및 위배사항을 정비하여 군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 나.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 2018. 12. 31.까지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안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기준 신설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항 단서에 의하면 시군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금액을 1/2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나. 법령 등 재기재사항 삭제

- 정의, 위원 기능·수당, 시행규칙, 가산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안 제2조·제4조·제10조·제17조·제20조·제22조)

다. 실효 규정인 지하수특별회계 삭제(안 제3장(제12조~제16조))

- 존속기한 만료 (2018. 12. 31.까지)

라.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등 변경(안 제19조·제21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1. 2. 5. ~ 2021. 2. 25.(20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환경과

- 전화번호 : 055)940-3513

- FAX : 055)940-3759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을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행보증금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50
2.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제4조 앞의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의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거창군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유량계”를 “유량계(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p> <p>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p>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p> <p>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p> <p>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 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p> <p>2.~3. (생략)</p> | <p><삭 제></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u>시행규칙</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삭 제></p> <p>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u>거창군수</u>(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p> <p>1.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p> <p>2.~3. (현행과 같음)</p> <p><신 설> 제3조의2(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 「지</p> |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

제4조(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12조(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에 대한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행보증금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50
2.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삭 제>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삭 제>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 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용도
3.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4. 제17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드는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
5.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을 징수관 및 재무관으로, 지하수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으로 각각 지정한다.

제16조(관리 및 운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

제17조(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3. 국가 또는 군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제18조(산정방법)

①~② (생략)

<삭제>

<삭제>

<삭제>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거창군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산정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9조(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

①~② (생략)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가산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1조(부과액 조정신청)

①~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제>

<삭제>

제21조(부과액 조정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 건 | 비 고 |
|--------|-----|-----|
| | | |

관계법령

□ 「지하수법」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2.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방법·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6.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③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특별회

계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시행일: 2022. 1. 6.] 제30조의3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 2021. 1. 5.>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5. 22., 2016. 12. 27.>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20. 3. 24.>
- ⑥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 ④ 법 제7조,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⑥ 삭제 <2001. 12. 19.>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① 삭제 <2009. 4. 30.>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4.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2. 제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한 용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전년도 세입·세출
3.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4. 차입금의 상환계획
5. 그 밖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법 제30조의2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 중 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채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한 경우

② 삭제 <2013. 10. 30.>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

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며,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다. 목적세의 특별회계 운영 및 존속기한 도입(제9조)

1) 목적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 외에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부 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1조~제3조 (생략)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70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24.>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24,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이의신청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 사유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기간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95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받은 이의신청인은 문서로 결함을 보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말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

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다만,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羈束)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103조의19, 103조의34, 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97조(결정의 경정)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처분기간(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내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⑥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제99조(청구의 효력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법제처 조례규제개선과제) 거창군 지하수조례**

| 과제제목 | 문제점 | 개선방안 |
|---------------------|--|--|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 혜택 확대 | 「지하수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 이용자가 공사착공 전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하여 시·군수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주민에게 감경혜택이 미치지 않을 우려 | 지하수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에게 감경혜택 확대 ⇒제3조의2 신설 |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영송지구, 외탐지구, 양지지구, 수옥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안내문을 통보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77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2. 8. ~ 2021. 2. 22.(14일간)
3.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을 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의거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담당(☎ 055-940-3322~2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조서 1부. 끝.

2021. 2. 8.

거 창 군 수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수정)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2. 8.

거창군수

1. 추진근거

- 「대기관리권역법」 제39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 지원대상

- 보일러 설치 후 10년 이상 사용한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로 교체하려는(한) 자

(신축주택 등 보일러 신규 설치는 제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인증현황 확인 : el.keiti.re.kr)

※ 지원 제외대상

- 당해연도 이전에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한 자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
-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공동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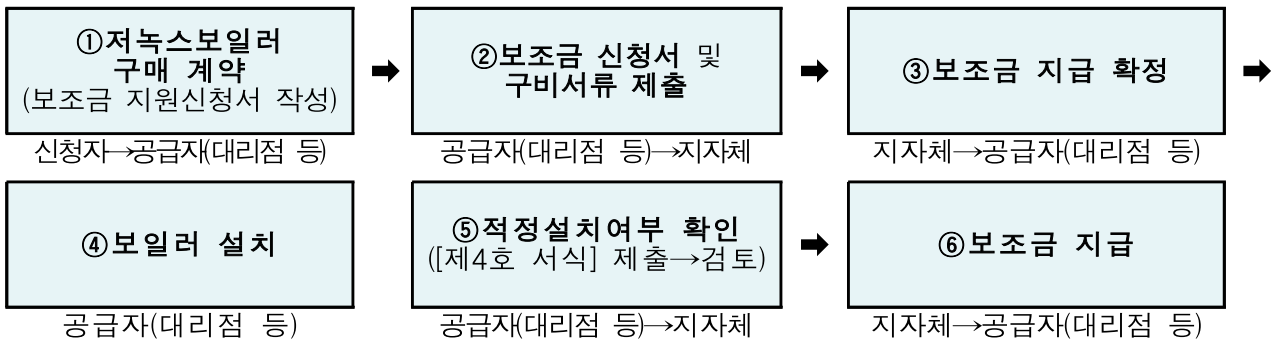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일반가정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2021년 사업비 소진시까지만 지원
- 지원물량 : 일반가정 28대, 저소득층 : 24대
 - *지원수량은 일반가정과 저소득층 신청 수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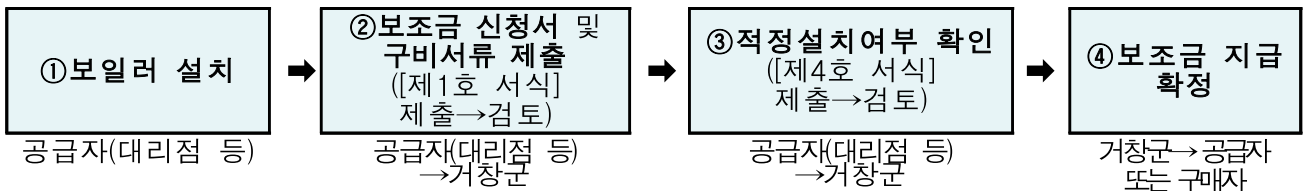
4. 보조금 신청

가. 보조금 신청 절차

- (사전신청) 보일러를 교체하기 전인 경우 : 공급자가 신청



- (사후신청) 보일러를 이미 교체한 경우 : 공급자 또는 구매자 신청



나.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 5. (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보일러 대리점 또는 설치업체)를 통해 신청
 - 공고일 이전에 설치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신청 가능

○ 접수처 : 거창군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055-940-3493)

다.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통장 사본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전·월세 계약서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 저소득층 증명서류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설치 완료된 지원 대상 보일러 및 제조명판 표시 사진 [별첨1]
- 계약이행 증빙서류 [별첨2]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청렴이행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라. 대상자 선정

- 사업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통보

마. 보조금 지급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 제출서류가 미흡할 경우에는 보완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6. 유의사항

- ①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공급자에게 설치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② 공급자는 구매자와 계약 체결 시 보조금 및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
- ③ 저녹스 보일러 설치 전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득이하게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지연사유 및 설치계획을 제출)
-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콘덴싱)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리 신청한 공급자의 경우에는 1년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금지
- ⑥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문의처 : 거창군청 환경과(☎ 940-3493, 저녹스 보일러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지급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 |
|---|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
|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류 후 5년간 보존 |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 |
|--|
|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지방환경관서, 환경부 |
|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류 후 5년간 보존 |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거창군수 귀하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목록제출

1. 보일러 제작사 및 모델명

| | |
|--------------|------------------|
| ○제 작 사 : | ○판 매 사 : |
| ○모 델 명 : | ○보일러용량 : Kcal/hr |
| ○제조번호(S/N) : | ○설치대수 : |

2. 설치일자 : 2021년 월 일

3. 설치장소(주소) :

4.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 별지 작성

5. 별첨 : 세금계산서,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신축 공동주택 최초 소유자 등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간이영수증은 불가함.

위와 같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별첨1]

저녹스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 보일러 모델명과 제조번호를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

| | |
|---|---|
| <p>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보일러 제조명판이나 시공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에 기재 필요(설치 연도 확인이 필요) | <p>시공중인 현장 사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보일러 제거된 신규 보일러 설치 전 사진- 반드시 '21년에 설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 휴대폰 날짜 등이 사진상에 함께 표시 필요 |
| <p>설치완료 된 보일러 사진</p> | <p>'시공표지판' 표시 사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공자- 보일러 (제조사명, 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시공내역 <p>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공표지판 사진 부착</p> |

[별첨2]

저녹스보일러 설치 계약이행 증빙서류

| 1. 보조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증빙 | 2. 보조금 부분에 대한 증빙 |
|---|------------------|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첨부 간영수증(×), 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

※ 보조금 지급 요청서 상의 공급자와 구매영수증의 공급자가 반드시 일치해야함.

공급자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요청하는 경우

1. 보조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증빙서류
2. 보조금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증빙서류

구매자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요청하는 경우

1. 전체 보일러 가격에 대한 계약이행 증빙서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거창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거창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거창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 보일러 구매자

성명 :

○ 보일러 공급자

상호 :

(서명)

성명 :

(서명)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제2항(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8.

거 창 군 수

- 1.공고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2.공고기간 : 2021.02.08.~ 2021.02.23.(15일간)
- 3.대상차량

| 순번 | 차량번호 | 차명 | 모델연도 | 운행정지사유 | 운행정지일자 |
|----|---------|----|------|--------|--------------|
| 1 | 68보6960 | 투싼 | 2006 | 기타 | 2021. 2. 23. |

4.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였으며, 해당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의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의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자동차는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 055-940-3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 개정이유

가. 현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공포 '21. 1. 12. / 시행 '21. 7. 13.)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맞도록 보조금 지급 규정 개정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수정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근거법 수정(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8조, 제19조)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을 수정(안 제5조)

- (현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변경)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에 맞도록 보조금 지급 규정 변경(안 제16조)

4. 예고기간 : 2021. 2. 10.(수) ~ 3. 2.(화)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기획예산담당관)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전화 055-940-3053, 팩스 055-940-3029, 이메일 dlwhdthq@korea.kr

라.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055)940-305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 건 | 비 고 |
|--------|-----|-----|
| | |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1~ |
|----------|-------|

| | |
|-------|------------|
| 제출연월일 | 2021. 2. . |
| 제 출 자 | 기획예산담당관 |

1. 제안 이유

- 가. 현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 공포(공포 '21. 1. 12. / 시행 '21. 7. 13.)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맞도록 보조금 지급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수정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상위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근거법 수정(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8조, 제19조)
-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을 수정(안 제5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에 맞도록 보조금 지급 규정 변경(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해당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규제혁신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 (2) 규제심사
 - (3) 입법예고 : 2021. 2. 10. ~ 2021. 3. 2.
 - (4)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평가의뢰 예정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의 상위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중 “법 제32조의3제8항”을 “법 제26조제9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4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 1호 중 “법령과”를 “법령, 조례 및”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 비로 교부하되,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교부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 중 “**법 제32조의7**”을 “**법 제27조**”으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를 “**법 제12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상 위 법 : 지방재정법</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9.11.27.)</p> <p>② <u>위촉위원</u>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u>한차례</u>만 연임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p> <p>1. 법 제32조의3제8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p> <p>2. (생략)</p> | <p>상 위 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9.11.27.)</p> <p>② <u>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위원</u>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u>한 차례</u>만 연임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p> <p>1. 법 제26조제9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p> <p>2. (현행과 같음)</p> |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13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2019.11.27.)
2. ~ 4. (생략)

16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 4. (현행과 같음)

16조(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하되,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교부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

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제18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 9. 6.>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 11. 28.>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 9. 6.>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시행 2020. 3.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 3. 30., 일부개정.]

○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 ※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 교부방법

-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하되,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교부 가능
- ※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의 적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
-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 ※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가. 「지방재정법」 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맞게 조문 정비
- 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지역회의의 구성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주민의 권리 등(안 제1조~제5조)

- ↳ 주민 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
 - 주민의 범위 확대
 - ▶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나.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안 제6조~제9조)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주민의견 수렴결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안 제10조~제19조)

- ↳ 위원 확대(15명→30명), 연임 규정,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확대(15명→30명)
- 위촉직 위원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분과위원회 설치·구성 등 근거 신설
- 운영개선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 또는 연구회 설치 근거 신설

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안 제20조~제21조)

- ↳ 읍·면별 지역회의 설치 및 '주민자치회' 대행 근거 신설
-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으며, 지역회의의 기능은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지역회의는 10명 이상 구성하고,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둠
- 위원장 선출과 직무, 위원 임기 및 해촉, 회의, 간사는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 지역회의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등 기능 수행

마. 예산학교, 보상 및 재정 지원 등(안 제22조~제25조)

- ↳ 예산학교 운영, 제안자 보상, 지역회의 등 재정 지원 근거 신설
-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단체 등에 위탁 가능
- 주민참여 우수사업 발굴(제안) 등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4. 예고기간 : 2021. 2. 10.(수) ~ 3. 2.(화)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기획예산담당관)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전화 055-940-3053, 팩스 055-940-3029, 이메일 dlwhdthq@korea.kr

라.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055)940-305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 건 | 비 고 |
|--------|-----|-----|
| | |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1~ |
|----------|-------|

| | |
|-------|------------|
| 제출연월일 | 2021. 2. . |
| 제 출 자 | 기획예산담당관 |

1. 제안 이유

- 가. 상위법(「지방재정법」 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맞게 정비
- 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지역회의 구성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주민의 권리 등(안 제1조~제5조)
 - 주민 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
- 나.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안 제6조~제9조)
-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안 제10조~제19조)
 - 위원 확대(15명→30명), 연임규정 신설, 공개모집 절차 구체화
 - 분과위원회 설치·구성 등 근거 마련
- 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안 제20조~제21조)
 - 읍·면 지역회의 구성 및 회의, 기능, ‘주민자치회’ 대행 근거 신설
- 마. 예산학교, 보상 및 재정 지원 등(안 제22조~제25조)
 -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 지역회의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제15조, 제2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해당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규제혁신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 (2) 규제심사
 - (3) 입법예고 : 2021. 2. 10. ~ 2021. 3. 2.
 - (4)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 : 미첨부사유서 불임
 - (5) 성별영향분석 : 평가의뢰 예정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거창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나.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다.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 라. 가목, 나목 및 다목 외에 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주민참여예산제”란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립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보나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예산편성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3.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안 조정·심의의결
4. 주민참여예산제 홍보활동
5. 그 밖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 있게 위촉한다. 다만,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은 당

연직 위원이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선정기준, 모집기간 및 선정 인원 등을 미리 군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한 총 인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추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획보건분과위원회 : 기획예산담당관, 사업소 소관업무
2. 행정복지분과위원회 : 행정복지국 소관업무
3. 경제산업분과위원회 : 경제산업국 소관업무
4. 농업분과위원회 :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제외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소관부서의 직제순 상위 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④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등) 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및 개선방안,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② 운영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각 분과위원장 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연구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20조(지역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이 경우 지역회의의 기능은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이를 대행 할 수 있다.

③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주민예산학교 수료자를 우선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④ 지역회의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지역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임기,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는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군 예산편성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2. 제2호에 따른 결과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
3. 그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5장 보칙

제22조(예산학교) ① 군수는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참여자 보상)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우수사업 발굴 등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및 지급방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재정 지원 등) 군수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소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07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3. 27.]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

[제목개정 2020. 3. 3.]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국 행정과) [시행 2019.10. 8.]

제5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주민자치회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7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기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읍면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3. 읍면에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군의회 의원

③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하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 계획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60
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사업장,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20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2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별로 예비위원을 5명 이내로 함께 위촉해야 한다.

- ④ 군수는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비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해당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 ⑤ 군수는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4.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군수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위원의 해촉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자치회장의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②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4조(회의)**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월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자치회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 ② 주민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주민자치회의 운영
 - 2. 제16조에 따른 자치계획안
 - 3.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 4. 그 밖에 지역 현안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주민총회는 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의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④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 2. 임시회의: 주민자치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주민총회는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1개월 전까지 심의 안건 등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주민총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⑨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개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결 결과 및 회의록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21조(간사 등)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8일

거창군수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계획

1. 개정 이유

- 법령위임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 개선
-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범위 확정

2. 주요내용

| 유형 | 구분 | 내 용 | 비 고 |
|----|---------------------|----------------------------------|--------|
| 변경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 개선 | ○ 신용카드를 통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규정 마련 | 제16조의2 |
| | 가산금 범위 설정 | ○ 법령에 따라 100분의2 범위 안에서 가산금 범위 설정 | 제29조 |

3. 개정 규칙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도사업소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거창군 수도사업소
- 우편번호: 50126, 전화: 055-940-8418, 팩스: 055-940-8409
이메일: dudgh8241@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1- |
|----------|-------|

| | |
|-------|-----------|
| 제출일자 | 2021. . . |
| 제 출 자 | 수도사업소장 |

1. 제안 이유

「하수도법」 개정(2021. 1. 5. 시행)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령위임 범위에서 가산금 범위를 확정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위임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 명시(안 제16조2)
- 나. 법령 위임범위에서 가산금 범위를 확정하여 정함(안 제2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61조·제73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업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과당월”을 “부과하는 그 달”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사용료등”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가산금) 법 제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경우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③ (생략)</p> <p>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u>부과당월을</u>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p> <p>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u>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u></p> <p>제28조(이의신청) ① <u>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②~④ (생략)</p> <p>제29조(가산금) <u>군수는 사용료등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u> 1. <u>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x2/100x12개월x연체일수/365</u> 2. <u>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2</u></p> | <p>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u>부과하는 그 달을</u>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p> <p>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u>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u></p> <p>제28조(이의신청) ① <u>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②~④ (현행과 같음)</p> <p>제29조(가산금) <u>법 제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경우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u></p> |

관계법령

□ 「하수도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52호, 2021. 1. 5., 일부개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3. 7. 16>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1.11.14., 2020. 5.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0. 5. 26., 2021. 1. 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2021. 1. 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2011. 11. 14., 2021. 1. 5.>

제73조(강제징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7852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0조의3제4호, 제46조, 제48조제4호, 제54조, 제61조, 제62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80조제4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 제39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9조, 제76조, 제77조제11호, 제80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제13호의 개정규

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조 (생략)

제8조(사용료등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생략)

하수도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52호, 2021. 1.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와 관련된 결격 사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며,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의 설치신고에 대하여 수리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마. (생략)

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사용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사용료 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제1항).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8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압류의 요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행일 : 2021. 7. 6.] 제10조

제11조(질문권·검사권)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검사 및 수색 참여자) ① 징수공무원은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검사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그 검사 또는 수색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징수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시행일 : 2021. 7. 6.] 제12조

제13조(압류조서) ① 징수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② 징수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12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징수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징수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제14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2021. 1. 5.>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5.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일 : 2021. 7. 6.] 제14조

제15조(압류해제의 통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자에게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류조서에 영수사실을 적고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우선하는 채권에 상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의 종류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

제18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에 체납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3관,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7관까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2절제9관,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를 준용하고,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한다.

제21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을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지방세외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3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6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연도·과목·금액·가산금·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3. 24.>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3. 24] [행정안전부령 제175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3조(독촉장)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호의9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한 차례만 발부하며 납부고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법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10서식에 따른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4조(압류통지) 영 제8조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증표) 영 제9조에 따른 징수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압류조서) 영 제10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압류해제조서) 영 제11조에 따른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압류해제의 통지) 영 제12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영 제16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법 제19조에 따라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에 대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 명령, 교부청구, 공매대행의뢰, 공매대행의 통지, 공매의 통지, 매각결정통지,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 및 등기청구에 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8일

거창군수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1. 개정 이유

- 상하수도 사용료 가산금을 합리적으로 설정
- 하수도 사용료 감면규정을 개선하여 수도행정의 형평성 제고
- 하수도 사용료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마련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오납금 환급이자 설정

2. 주요내용

| 유형 | 구분 | 내 용 | 비 고 |
|----|----------------|---|------|
| 변경 | 가산금 규정 마련 | ○ 가산금 규정 합리적 설정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text{미납요금} \times 2 / 100 \times 12 \text{개월} \times \text{연체일수} / 36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2 | 제16조 |
| | 감면 규정 개선 | ○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구체화 ○ 감면 포괄 규정 삭제 ○ 근거없는 군부대 가산금 감면 규정 삭제 | 제17조 |
| | 이의신청 방법, 절차 마련 | ○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한 조정신청서 마련 | 제18조 |
| | 과오납금 환급 이자 설정 | ○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환급 이자 설정 | 제20조 |

3. 개정 규칙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도사업소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거창군 수도사업소
- 우편번호: 50126, 전화: 055-940-8418, 팩스: 055-940-8409
이메일: dudgh8241@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 의안 번호 | 2021- |
|----------|-------|

| | |
|-------|-----------|
| 제출일자 | 2021. . . |
| 제 출 자 | 수도사업소장 |

1. 제안 이유

하수도 사용료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면대상 임의규정을 삭제하여 감면혜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혼란을 방지하고,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와 「지방세기본법」상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이자 기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인 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체계를 마련하여 군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산금 부과 기준 신설함(안 제16조제1항)

- 1) 조례 제29조 위임
- 2) 체납된 사용료 등의 100분의 2를 납부기한 경과일 1개월 기준으로 계산식 달리하여 가산금 부과기준 합리적 설정

나.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규정 개선함(안 제17조)

- 1) 하수도 사용료 감면율 구체화
- 2) 감면대상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포괄규정 삭제
- 3) 특별한 사정이나 근거 없이 가산금 감면대상인 군부대 삭제

다.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18조)

라.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이자를 정함(안 제20조)

- 1) 준용: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환급이자’ 지급기준
- 2)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 고려하여 이자 가산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73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지방자치법」 제140조, 「지방세기본법」 제6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나) 예고결과: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 중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를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적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정한다. 가. 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을 “산출하고 계산식은 “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으로 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정 가. 1개월간 사용량=전력 kw당 출수량×1개월간 전력사용량”으로 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정한다. 가. 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을 “산출하고 계산식은 “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으로 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정한다.”를 “산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정”을 “산출”로 “산정하지 아니한다.”를 “산출하지 아니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정”을 “산출”로 각각 하고 “산정한다.”를 “산출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정”을 “산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7항제3호 중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를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한다.”를 “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으로 “따른다.”를 “따름”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가산금과 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례 제29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 \times 2/100 \times 12개월 \times 연체일수/36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2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등의 가산금이 가산금 징수비용보다 적은 소액인 100원 이하는 면제한다.

③ 법 제73조에 따른 독촉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한다.

1. 상수도 사용자일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급

2. 급수사용료와 따로 발급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발급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을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제4항 중 “하수도 사용료 등”을 “사용료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를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이의신청) 조례 제28조에 따른 이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의 부과액 조정신청서에 따른다.

제20조제2항 조 제목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을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항·제4항 중 “환불”을 “환급”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불”을 “환급”으로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과오납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

급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u>준용한다.</u></p> <p>제8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u>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는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한다.</u></p> <p>제13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u>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u>」를 <u>준용한다.</u></p> <p>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가.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p> <p>3.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u>산정</u> 가.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p> <p>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p> | <p>제5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u>따른다.</u></p> <p>제8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u>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는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한다.</u></p> <p>제13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u>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u>」를 <u>적용</u></p> <p>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u>산출하고 계산식은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으로 함</u></p> <p>3.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u>산출하고 계산식은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으로 함</u></p> <p>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p> |

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

가.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 4세제곱미터 사용량으로 산정하며,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을 산정한다.

④~⑤ (생략)

제14조(사용량의 조정)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오수배출자가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하수도사용자로서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업종을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분할한 요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④~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출하고 계산식은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으로 함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출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 4세제곱미터 사용량으로 산출하며,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출하지 아니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출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을 산출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량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출할 수 있다.

③ 오수배출자가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하수도사용자로서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업종을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분할한 요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④~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1. 「하수도법」 제22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자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 「거창군 상수 급수조례」 제25조 및 제42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단수 처분된 자

⑧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세대별 인정 조정은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신고에 따른다.

제16조(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이 연체금 징수비용보다 적은 소액 연체금인 100원 이하는 면제한다.

다.

1. 「하수도법」 제22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자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5조 및 제42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단수 처분된 자

⑧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세대별 인정 조정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신고에 따른다.

제16조(가산금과 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례 제29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frac{\text{미납요금} \times 2}{100} \times 12 \text{개월} \times \frac{\text{연체일수}}{36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2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등의 가산금이 가산금 징수비용보다 적은 소액인 100원 이하는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조례 제2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제17조(감면) ① 조례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시설 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감면을 받은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③ 법 제73조에 따른 독촉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한다.

1. 상수도 사용자일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급
2. 급수사용료와 따로 발급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발급

제17조(감면)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시설 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삭 제>

② 사용료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등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사용료등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감면을 받은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

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⑤ 조례 제29조에 따른 가산금 중 군 부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의 가산금은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이의신청) 조례 제28조에 따른 이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의 부과액 조정신청서에 따른다.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급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 제 호 | | | | | | |
|--|----|----|------------|-----|---|----|
| 독 축 장 | | | | | | |
| 종목 | 연도 | 월분 | 하수도 사용료 | 가산금 | 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거 창 군 수 | | | | | | |

| | |
|----------------|--|
| 우 편 엽 서 | |
| 우 표 | |

【별지 제14호서식】

| | | | | | | |
|--|--------|------------|------------|---|-----|---|
| 독 촉 장 | | | | | | |
| 납 입 자 | 성 명 | | | | | |
| | 주 소 | | | | | |
| 체 납 액 | | | | | | |
| 종 목 | 부과내역 | 고 지 번 호 | 당 초 납기일 | 체 납 액 | | |
| | | | | 당초 원인자 부 담 금 | 가산금 | 계 |
| 원인자부담금 | | | | | | |
| <p>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_____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u>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 한 법률</u>」에 따라 징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4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40px; font-size: 24px;">거 창 군 수 (인)</p>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 | | | | | |
|---------------------------|---------|-----|-------|--------------|-------------|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u>환급</u> 청구서 | | | | | 처리기한 즉 시 |
| 수 신 | 거 창 군 수 | | | | |
| 관리자의 성명 | | | 생년월일 | | |
| | 월분 | 내 용 | 과오납금액 | <u>환급</u> 이자 | 청구금액 |
| | | | | | |
| | | | | | |

위의 과오납금을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

| | | | | | |
|-----|---------|-----|-------|--------------|------|
| 수 신 | 거 창 군 수 | | | | |
| 연 도 | 월분 | 내 용 | 과오납금액 | <u>환급</u> 이자 | 청구금액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

| 부 과 액 조 정 신 청 서 | | | | | | | |
|---|--------|----|-----|-----|------|-------|------|
| 신 청 인 | 수용가 번호 | | | | 생년월일 | (남/여) | |
| | 주소 | | | | | | |
| | 성명 | | | 업종 | | | 전화번호 |
| 조 정 신 청 내 용 | 연도 | 납기 | 조정량 | 고지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의 내 용 | | | | | | | |
| <p>「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거창군수 귀하</p> | | | | | | | |
| 첨부서류: 증명서류 | | | | | | | |

관련법령

□ 「하수도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52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쳐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개정 2020. 5. 2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21. 1. 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4., 2021. 1. 5.>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강제징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7852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0조의3제4호, 제46조, 제48조제4호, 제54조, **제61조**, 제62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80조제4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 제39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9조, 제76조, 제77조제11호, 제80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조 (생략)

제8조(사용료등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생략)

하수도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52호, 2021. 1.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와 관련된 결격 사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며,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의 설치신고에 대하여 수리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마. (생략)

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사용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사용료 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제1항).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의견서 2019.4.(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방안)

4 사용료 미납에 따른 연체금 부과·감면 불합리

- (연체금) 일부 지자체(단양군, 공주시, 금산군, 장수군, 목포시, 상주시, 의성군)는 조례상 근거 없이 연체금을 부과하거나, 연체금 부과 규정 폐지(장흥군) 이후에도 부과
- (연체이자율) 조례상 연체금 부과 규정은 있으나, 연체이자율을 규정하지 않아 임의적 부과·징수 가능
 -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합리적 근거와 기준 없이 전기, 도시가스, 전화 등 다른 공공요금 보다 높은(5%) 연체이자율 적용
 - ※ 공공요금 연체이자율(월) : 1.5%(전기), 2%(도시가스), 2%(전화) 수준
 < 조례상 연체이자율 규정 현황 >
 ('19.2.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 연체이자율 미설정 | 연체이자율 설정 | | |
|------|--------------|----------|-----|-----------|
| | | 2% | 3% | 5% |
| 지자체수 | 3개 | 47개 | 93개 | 4개 |

- 또한, 60개 지자체가 연체금을 부과 하면서 연체일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고정 이자율(2~5%)로 연체금 부과
- (연체금 감면) 조례상 근거 규정 없이 임의적 감면이 이루어지고, 군부대, 경찰서, 외국공관 등 특정기관에 연체금 감면 혜택 제공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8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체재·부과금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압류의 요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체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체재·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납자에게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징수공무원은 채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행일 : 2021. 7. 6.] 제10조

제11조(질문권·검사권) 징수공무원은 채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채납자
2. 채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채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채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채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채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3회 이상 채납하거나 채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검사 및 수색 참여자) ① 징수공무원은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검사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그 검사 또는 수색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징수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시행일 : 2021. 7. 6.] 제12조

제13조(압류조서) ① 징수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채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채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② 징수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12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징수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징수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제14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2021. 1. 5.>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

3. 제3자가 채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채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채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채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5.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일 : 2021. 7. 6.] 제14조

제15조(압류해제의 통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채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자에게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채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류조서에 영수사실을 적고 채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채납처분의 중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채납처분비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채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납자(채납자와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채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채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채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의 종류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

제18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에 체납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3관,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7관까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2절제9관,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를 준용하고,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3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6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연도·과목·금액·가산금·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3. 24.>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3. 24] [행정안전부령 제175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3조(독촉장)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호의9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한 차례만 발부하며 납부고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법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10서식에 따른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4조(압류통지) 영 제8조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증표) 영 제9조에 따른 징수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압류조서) 영 제10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압류해제조서) 영 제11조에 따른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압류해제의 통지) 영 제12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영 제16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법 제19조에 따라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에 대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 명령, 교부청구, 공매대행의뢰, 공매대행의 통지, 공매의 통지, 매각결정통지,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매각결정취소의 통지,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 및 등기청구에 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 현행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8조(이의신청) ① 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일 경우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일

5.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로 한다.

6.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 가.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 ② 제60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결정

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 2020. 3. 13, 일부개정]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8일

거창군수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1. 개정 이유

- 상하수도 사용료 분할 납부 규정을 마련하고, 체납으로 인한 정수 해제 수수료를 폐지하여 사용자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 유형 | 구분 | 내 용 | 비 고 |
|----|-------------|---|------|
| 신설 | 분할 납부 규정 마련 | ○ 옥내누수로 상하수도 사용료가 지난달보다 50만원 이상 많이 나온 경우, 3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 제18조 |
| | 정수해제 수수료 폐지 | ○ 체납으로 인한 급수 정지 해지 수수료 폐지 | 제22조 |

3. 개정 규칙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도사업소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거창군 수도사업소
- 우편번호: 50126, 전화: 055-940-8418, 팩스: 055-940-8409
이메일: dudgh8241@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 의안 번호 | 2021- |
|----------|-------|

| | |
|-------|-----------|
| 제출일자 | 2021. . . |
| 제 출 자 | 수도사업소장 |

1. 제안 이유

사용료 체납으로 수도 공급이 중단된 경우 공급 재개를 위한 정수 해제 수수료를 폐지해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할 납부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료 체납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분할 납부 규정 마련(안 제18조)
- 나. 체납으로 인한 정수 해제 수수료 폐지(안 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23조·제140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를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로 한다.

제5조 제1호·제2호·제3호를 제1항·제2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기존 제3호) 중 “배수관”을 “배수본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별표 1을 준용한다.”를 “별표 1에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기존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옥내 누수로 인하여 사용료가 지난달 대비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 금액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3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른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는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42조제1항제1호 따른 상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u>」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u>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5. (생략)</p> <p>제5조(급수승인)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u>배수관</u>에서는 급수 승인을 절대하지 아니한다.</p> <p>제12조(급수의 개선·중지와 폐전)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급수설비의 개선 시 수수료는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u>별표 1을 준용한다.</u></p> |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u>」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u>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p> <p>제5조(급수승인) ①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③ 송수관, 양수관, <u>배수본관</u>에서는 급수 승인을 절대하지 아니한다.</p> <p>제12조(급수의 개선·중지와 폐전)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급수설비의 개선 시 수수료는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u>별표 1에 따른다.</u></p> |

제18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상수도 사용자에게는 매월 납기 10일 이전에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납부한다.

<신 설>

② 사용자가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다.

<신 설>

제18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상수도 사용자에게는 매월 납기 10일 이전에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납부한다.

② 옥내 누수로 인하여 사용료가 지난 달 대비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 금액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다.

제22조(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른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는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42조제1항제1호 따른 상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상하수도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

| | | | | | | | |
|------|-------------------|-----------------------|--|-------|---------|----|--|
| 신청인 | 성명 | | | 수용가번호 | | | |
|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 |
| | 주소 | | | | | | |
| 신청내용 | 고지내용 | 금월 부과 결정량(m^3) | | | 고지금액(원) | | |
| | 분할신청 (m^3) | 1차 | | 2차 | | 3차 | |

위 사람은 상수도 누수로 인해 위와 같이 사용료가 고지되었기에 분할납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귀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관계법령

□ 「수도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총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42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상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상수도계량기(설치봉인 포함)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상수도 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삭제 <2014.10.01.>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상수도계량기를 무단 사용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 9.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 상수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경우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따르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등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원)

| 구 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 (5) 시공자재 검사 | | | |
|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 | 2,000 | |
|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 | 4,000 | |
| (6) 준공검사 | | | |
|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 | 2,000 | |
|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 | 4,000 | |
| (7) 수도계량기 시험 | | | |
|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 | 1,000 | |
|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 | 2,000 | |
| (8) 정수처분 해제 | | | |
|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 | <u>2,000</u> | |
|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 | <u>4,000</u> | |

□ 「전자정부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

보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